##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40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최민희·정동영·이정헌

김남근 • 이연희 • 이재정

정성호・김 현・권향엽

박해철 · 황정아 · 양부남

조인철 · 임미애 · 황명선

김 윤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해당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 · 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 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 · 승인 ·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합의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임위원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 일상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을 "1인, 상임위원 1인을"로, "5인의 상임인"을 "9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상임인 위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5인"을 "9인"으로, "2인은"을 "3인은"으로,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를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을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방송채널정책"를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로 한다.

제12조제7호 중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의 승인"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등록"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9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본문 중 "2인"을 "3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지명은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

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	<u>1인, 상임위원 1인을</u>
<u>인</u> 위원으로 구성한다.	<u>9인의</u>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u>라 한다)은</u> 정무직 공무원으로	<u> </u>
보한다.	
③ <u>위원은</u> 「정부조직법」 제1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u> </u>
된다.	
<u>&lt;신 설&gt;</u>	④ 비상임인 위원은 위원회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u>5인</u> 중 위원장을 포함	② <u>9인</u>
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	<u>3인은</u> <u>6</u>
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	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
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	<u>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u>
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	
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u>1인을</u>	아닌 교섭단체

<u>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u> 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u>위원은</u>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③ (생략)

-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 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 로 한다.
  -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u>방송채널정</u> 책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②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비교섭단체가 주천한 3인
<u>을 포함하여</u>
③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u>다만, 상임</u>
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u>위원장,</u>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u>.</u>
1
방송채널
정책, 유료방송정책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
항)

한다.

- 1. ~ 6. (생략)
- 7. <u>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u>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신 설>

9. (생 략) <u><신 설></u>

10. ~ 29. (생 략)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 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 ~ 6. (현행과 같음)
7. <u>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u>
• 등록
8
허가
8의2.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
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
한 사항
<u> </u>
9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10. ~ 29.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 <u>3인</u>
<u>.</u>
②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
	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